

2025년도

# 예약 장학생(장학금) 신청 안내서



공익 재단 법인 오사카부 육영회

우534-0026 오사카시 미야코지마구 아미지마쵸 6-20  
오사카 사학 회관 2층  
업무 시간 평일 9:00~17:30



문의처

선정 대출과

TEL 06 - 6357 - 6272  
FAX 06 - 6358 - 3053

홈페이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오사카부 육영회



(주) 다른 전화 번호로 걸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1**

## 제도의 개요

고등학교 등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가운데 향학심이 풍부하고 동시에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진학 전에 장학금 대출을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오사카부 육영회 장학금은 무이자입니다.

**2**

## 장학금 종류

- 입학 시 증액 장학 자금

고등학교 등(중등 교육 학교의 후기 과정 제외)에 대한 입학 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는 데 충당하기 위해 입학 전에 대출하는 학자금

- 장학 자금

고등학교 등의 수업료 및 그 밖의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는 데 충당하기 위해 재학 중에 대출하는 학자금

※※ 입학 시 증액 장학 자금의 신청은 이번 모집에 한합니다 ※※

고등학교 등에 진학할 때 경제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번 예약 모집을 통해 반드시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후 대출이 필요 없게 된 경우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 신청 자격

- 2025년 4월에 학교 교육법에 따른 다음과 같은 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자
  - 고등학교(중등 교육 학교 후기 과정 및 특별 지원 학교 고등부 포함), 고등 전문 학교
  - 전수 학교의 고등 과정(단, 수업 연한 1년 이상의 학과)

주) 중등 교육 학교의 후기 과정은 '입학 시 증액 장학 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호자(부모 등)가 오사카부 내에 주소가 있을 것  
보호자란 민법에 따른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을 말하며, 보호자가 없을 경우는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생계를 뒷받침하고 동시에 학자금을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호자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의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체류 자격이 필요합니다.

### 【체류 자격】

- 영주자
- 일본인의 배우자 등
- 영주자의 배우자 등
- 정주자(※)

(※)정주자에 대해서는 훗날 일본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 분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보호자(부모 등)에 대해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득 판정액이 다음과 같을 것  
(※2024년도 주민세 과세 표준액 등에 따른 보호자 합산액)

### 【계산식】

시정총민세 과세 표준액 × 6% – 시정총민세 조정 공제액 (\*) = 소득 판정액

(\*) 정령 지정 도시에 시민세를 납세하고 있는 경우는 '조정 공제액'에 3/4을 곱한 금액입니다.

(\*과세 표준액, 조정 공제액의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신청서 A표 뒷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구분	진학처	소득 판정액	연간 수입 기준(※)
입학 시 증액 장학 자금	국공립 · 사립	251,100엔 미만	800만 엔 미만
장학 자금	국공립	251,100엔 미만	800만 엔 미만
	사립	347,100엔 미만	1,000만 엔 미만

(※) 연간 수입 기준은 보호자 중 어느 한쪽이 일하고 자녀 2명(16세 이상 19세 미만 1명, 16세 미만 1명)이 있는 4인 세대의 경우입니다.

- ※1 지방세법 제29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 또는 동법 부칙 제3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항의 시정촌민세 소득할을 부과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0으로 합니다.
- ※2 과세 표준액이란 시정촌 · 도부현민세 소득할액 산정의 바탕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조정 공제란 2007년에 국가에서 지방으로 세원이 이양됨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 주민세와 인적 공제의 차액에 기인하는 부담액을 조정하기 위한 공제를 말합니다.
- ※4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마이나 포털'에서 과세 표준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 대출 한도액

- 입학 시 증액 장학 자금(아래의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금액: 1만 엔 단위)

진학처	대출 한도액 (통신제 과정)	※ 사립의 경우, 태블릿 등 ICT 관련 비용 부담 유무에 따라 대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국공립	10만 엔 (10만 엔)	
사립	37만 엔 (27만 엔)	
사립(ICT관련 비용 부담 없음)	30만 엔 (20만 엔)	

- 장학 자금(아래의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금액: 한도액 미만을 희망하는 경우는 1만 엔 단위)

진학처	소득 판정액	연간 수입 기준	대출 한도액(연간 금액)
국공립 사립	251,100엔 미만	800만 엔 미만	수업료 실질 부담액(※1)+기타 교육비 10만 엔 (수업료 실질 부담액(※1)이 무상인 경우는 한도액은 10만 엔입니다.)
사립	251,100엔 이상 347,100엔 미만	800만 엔 이상 1,000만 엔 미만	수업료 실질부담액(※1) (주) 24만 엔을 상한(※2)

(※1) 수업료 실질 부담액이란 각 학교의 수업료 연간 금액에서 국가의 취학 지원금이나 오사카부 수업료 지원 보조금, 학교의 독자적인 감면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수업료 실질 부담액이 24만 엔을 밑도는 경우는 그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오사카부 내의 사립 고등학교 등에 진학하는 학생 본인을 포함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세대로 소득판정액(보호자 합산)이 251,100엔 이상에 해당하여 오사카부 수업료 지원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대출 한도액이 다르거나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를 참조)

(주) 오사카부 사립 고등학생 등 취학 지원 추진교에 진학한 경우, "수업료 지원 보조금" 신청 상황 확인을 통해 부양하는 자녀의 인원수가 확정될 때까지는 자녀의 인원수를 1명으로 대출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출 초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과 대출분에 대해서는 상환해야 합니다.

## 5

### 신청 수속

~신청부터 대출까지의 흐름에 대해서는 [별지] 참조~

제출 서류	① 예약 장학생 신청서
	② 보호자 수입에 관한 증명서 (신청서 C표와 A표 뒷면의 견본을 참조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③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주민표 (신청서 C표 뒷면 [중요] 【주민표 제출 주의 사항】을 잘 확인한 후 제출해 주십시오.)
	④ 학생 본인 명의 통장 또는 현금 카드 등의 사본 (신청서 B표와 그 뒷면의 견본을 참조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제출 서류의 부족이나 미비점이 있는 경우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와 주민표의 주소가 다를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재학(출신) 중학교가 지정하는 기일(기한 엄수) 【학교 제출 기한: 월 일 ( )】
제출처	재학(출신) 중학교

## 6

**대출 예정자 결정**

대출 선정 여부 결정 통지는 12월 초순에 학교장을 통해 신청자(학생 본인)에게 합니다.  
선정자(이하 ‘대출 예정자’라 한다)에게는 ‘오사카부 육영회 예약 장학생 대출 예정자 결정 통지서’를 학교장을 통해 교부합니다.

**【채용자 통지 결과 내용】**

소득 판정액	통지 내용
251,100 엔 미만	입학시 증액 장학자금 및 장학자금 모두 이용 가능
251,100엔 이상 347,100 엔 미만	장학자금에 한해 이용 가능(입학시 증액 장학자금은 불채용)

## 7

**대출 수속 서류 교부**

차용 증서 등의 대출 수속 서류는 2025년 1월 하순에 학교를 통해 대출 예정자에게 교부합니다.  
(※교부 시기를 잊지 말고 반드시 학교에서 교부받아 주십시오.)

## 8

**대출 수속**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수속이 필요합니다. 제출 기간 내에 수속을 밟지 않을 경우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학 시 증액 장학 자금’과 ‘장학 자금’을 각각 수속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수속으로 양쪽의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속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출 수속 서류 교부 시에 다시 안내합니다.

- 입학 시 증액 장학 자금

- |           |  |
|-----------|--|
| (1) 제출처   | 공익재단법인 오사카부 육영회 선정 대출과   |
| (2) 제출 방법 | 오사카부 육영회에 우편 발송(특정 기록 우편 등)해 주십시오<br>(중요한 서류이므로 보통 우편이나 메일편은 이용하지 마십시오.) |
| (3) 제출 기간 | 다음 기간 내(입학하는 학교 확정 후)  |

신청 구분(※)	제출 기간
단수 지원(사립)	2025년 2월 5일(수)부터 2월 26일(수)까지(반드시 도착)
복수 지원(사립 · 국공립)	2025년 2월 26일(수)부터 3월 28일(금)까지(반드시 도착)

(※)신청 구분은 대출 예정자가 학교에 신청한 지원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입학한 후에는 대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출 기간 내에 수속해 주십시오.

- |           |   |
|-----------|---|
| (4) 제출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입학 시 증액 장학 자금 차용증</li> <li>② 연대 보증인(보호자)의 인감 등록 증명서(육영회에 제출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li> <li>③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합격 통지서 등의 사본)</li> </ul> |
| (5) 주의 사항 | 입학 시 증액 장학 자금 차용 증서에 기재된 입학 예정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는 대출금을 일괄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 장학 자금

- |           |  |
|-----------|--|
| (1) 제출처   | 진학처 고등학교 등   |
| (2) 제출 방법 | 지참 또는 진학처 고등학교 등이 지정하는 방법  |
| (3) 제출 기간 | 2025년 4월 초순까지(진학처 고등학교 등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
| (4) 제출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진학 신고서</li> <li>② 장학 자금 차용 증서</li> <li>③ 연대 보증인(보호자)의 인감 등록 증명서(육영회에 제출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li> </ul> |

## 대출 시기

- 입학 시 증액 장학 자금

입학하는 학교가 확정된 후 입학 전에 대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심사 완료 후 대략 10일 이내에 이체 수속을 실시합니다.

- 장학 자금

고등학교 등 재학 중에 다음과 같이 대출합니다.

대출 시기	제1회	제2회	제3회
대출일	5월 30일	10월 11일	1월 30일

- 대출은 금융 기관에 대한 이체를 통해 실시합니다.
- 대출일이 금융 기관의 비영업일에 해당할 때는 다음 영업일입니다.
- 대출액에 따라서는 제2회, 제3회 대출이 있습니다.
- 1회당 대출 상한액은 원칙적으로 국공립 10만 엔, 사립 20만 엔입니다.
- 대출 기간은 진학한 학교의 정규 최단 수업 기간입니다.

## 대출에 대해

- 대출은 장학생 본인의 예자금 계좌로 이체합니다.
- 매년 4월에 학교를 통해 장학생 자격을 확인합니다.  
확인한 결과, 장학 자금 대출을 중지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 매년도에 보호자의 소득 상황을 확인하여 당해 연도의 대출 한도액을 결정합니다. 소득 상황에 따라서는 장학 자금 대출을 중지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상황을 확인한 결과, 대출 초과가 발생한 경우는 상환해야 합니다.
- 장학 자금 대출액(연간 금액)은 취학 지원금 등의 금액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 지원금 등의 금액 변경에 따라 대출 초과가 발생한 경우는 상환해야 합니다.
- 수업료를 체납하거나 장학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명된 경우는 장학 자금 대출을 중지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 이동 신고에 대해

입학 후에 유급, 휴학, 퇴학, 전학 및 연대 보증인의 변경 또는 신고 사항 등에 변경(이동)이 발생한 경우는 학교를 통해 오사카부 육영회에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변경(이동) 신고를 게을리했을 때는 장학금 대출을 중지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총액 결정 통지

장학 자금을 대출받은 장학생에 대해 장학 자금 대출이 종료되었을 때 또는 장학 자금 대출을 폐지했을 때는 지금까지 대출한 금액 및 시기를 학교장을 통해 장학생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았을 때는 즉시 상환 계좌 신청서를 학교장을 경유하여 오사카부 육영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학금 상환

장학금은 대출금입니다. 졸업 후(대출 종료 후)에는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금은 후배를 위한 장학금이 되므로 확실하게 상환해 주십시오.

- 장학금 상환은 졸업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정해진 금액을 차용인(학생 본인)의 예자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 졸업 이외의 사유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퇴학 등의 이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대출이 종료되는 경우는 그해 10월, 6월 1일 이후에 대출이 종료되는 경우는 다음 해 10월부터 상환이 시작됩니다.
- 원칙적으로 매월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월간 금액은 대출 총액에 따라 다릅니다.  
([별지]의 ‘장학금 상환 예’를 참조해 주십시오.)
-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약속대로 상환이 어려울 경우는 반드시 오사카부 육영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하지 않고 체납이 지속될 경우는 체납액에 대해 체납 기간에 따라 연이율 8. 9%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상환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으면서 상환하지 않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정보 취급에 대해서는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고 동시에 적정하게 취급하며,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감독을 실시합니다.
2. 성명, 주소, 연대 보증인의 인감 등록 증명서, 소득 상황, 예저금 계좌, 계좌 명의 등의 개인 정보는 장학생 선정 심사, 장학금 이체 사무 및 장학금 상환 사무를 위해 이용합니다.
3. 상환자가 상환 기간 중에 차용인, 연대 보증인의 주소 등의 변경 신고를 게을리하여 청구 통지서 등을 송부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오사카부를 통해 주소지의 시구정촌에 주민표 등을 청구하여 주소 확인 조사를 합니다.

1. 장학금 대출 결정 후에 허위 신청 등이 판명된 경우는 대출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부적절한 사용이 판명된 경우는 대출 금액 전액을 일괄 상환해야 합니다.
3. 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취학 지원금 등의 제도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육영회 장학금 대출 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사카부 육영회의 알림이나 최신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장학금 상환 지원 제도(대리 상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도의 개요는 오사카부 육영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